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등본입니다.

2018. 6. 1.

법원주사 복 상 철



사 건 2017고정249 의료법위반

피 고 인 유승희

주거

등록기

조미경

주거

등록기

검 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영섭

판 결 선 고 2018. 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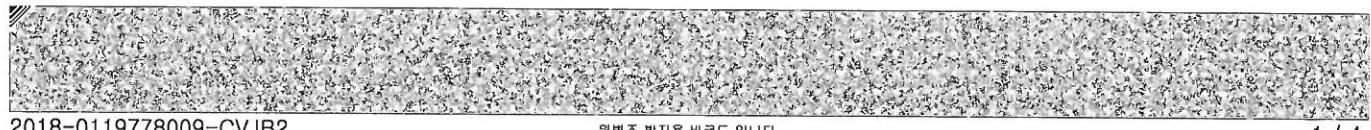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유승희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658-8 '생협뜸방'이라는 뜸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조미경은 위 동호회의 회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위 생협 뜸방에서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김남홍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는 등 그 무렵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유승희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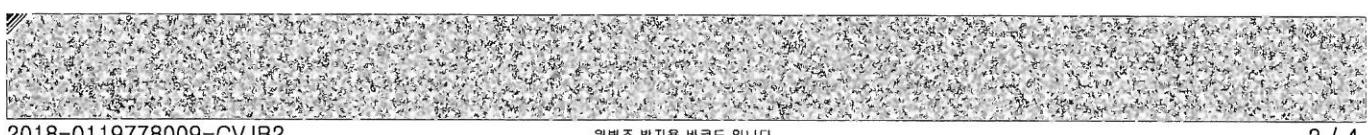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유승희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김남 홍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조미경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 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 실에 부합하는 증인 김남홍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1) 피고인이 한 뜸 시술 방법은 쑥 등의 재료를 인체의 특정 부위에 원뿔 모양으





음성출력용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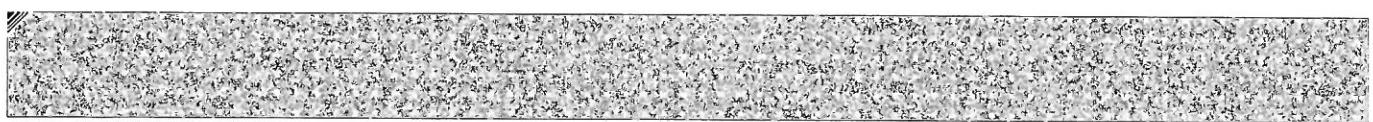
로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직접구 방식인데, 쌀알 반 정도 크기의 원뿔 모양의 뜸 쪽을 뜸 자리(경혈)에 놓고 태워 약 60 내지 70도의 열도로 가벼운 화상을 입혀 이때 발생하는 이종 단백체(히스토톡신)라는 물질을 통해 인체의 면역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뜸 쪽이 타는 시간은 1-2초 정도이고 동일부위에 3-5회 정도 실시한다.

(2) 이러한 쑥뜸 시술로 인해 최대 1도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자극을 주지 않거나 이내 연속해서 뜸을 떠칠 뜨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정도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구(라이터, 향 등) 및 재료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피고인 유승희는 1999년경 정통침뜸 평생교육원에서 1년 정도 김남수로부터 뜸을 뜨는 것을 배웠고, 그 후 귀농하여 지내다가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자 서로 뜸을 떠 주기 위하여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위 뜸방모임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는 마을 주민들 중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 정도 시간에 내어 뜸방을 찾아오는 동네 어른들에게 뜸자리를 잡아 주고 뜸을 뜨거나 그들이 스스로 뜸을 뜨게끔 하였다. 뜸방모임에서 뜸방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부 후원받음), 별도로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5) 위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쑥뜸 시술을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





아볼 수 없다.

(6) 이처럼 위 쪽뜰 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안희길 _____